혁신기술 · 경영융합대학원과정 운영규정

(신설 2006. 10. 18) (개정 2007. 1. 23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조(과정) 제③항에 의거하여 2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(이하 "사업"이라 한다)의 일환으로 조직되어지는 혁신기술·경영융합대학원과정(이하 "융합대학원 과정"이라한다)의 설치 및 우영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과와 연구분야) 융합대학원과정에 두는 학과와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.

학 과	연구분야	
반도체·디스플레이공학과	반도체·디스플레이 제조공정, 반도체·디스플레이 재료 및 소자	
메카트로닉스공학과	공정제어 및 정밀 가공, 센서계측 및 컴퓨터응용	
테크노경영학과	정보기술 및 신기술 트랜드, 기술생산 및 벤처창업경영	

제3조(입학) ① 입학전형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지원자격은 대학원 학칙에 정해진 바와 같으며, 2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단(이하 "사업단"이라한다) 연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정한다.
- ③ 입학전형은 특별전형 또는 일반전형으로 시행한다.
- ⑤ 합격사정, 신입생 등록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에 정해진 바와 같으며 사업의 참여대학원생 선정에 관한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.
- 제4조(등록, 휴학, 복학, 재입학) 등록, 휴학, 제적, 복학, 재입학은 대학원 학칙을 원칙으로 적용한다.

제5조 (수업) ① 수업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을 적용한다.

- ② 수강교과목은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를 선택한다.
- ③ 대학원의 강의 및 연구는 대학원 강의실과 각 해당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산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실습 등은 해당 산업체에서 진행할 수 있다.

제6조 (교과과정) ① 각 학위 과정의 학생은 다음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

교과목구분	석사과정	박사과정
공통 과목	6학점	9학점
타학과 과목	3학점 ~ 9학점	6학점 ~ 12학점
전공 과목	9학점 ~ 15학점	21학점

- ② 타학과과목이란 융합대학원과정 내의 3개학과내에 개설된 과목이외에 일반대학원과 벤처전문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지칭하고, 전공과목은 융합대학원과정 내 대학원생이 소속된 3개 학과 내에 개설된 과목을 말한다.
- 제7조 (이수 학점) 교과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한 학기 15시간 이상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 단, 현장실습은 한 학기 16일 이상으로 하여 이수학점으로 한다.
- **제8조 (수료 학점)** ① 학생이 석사를 수료하기 위한 최저 학점은 30학점,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 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42학점으로 한다.
 - ②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서 "참여 대학원생"의 자격으로 융합대학원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융합대학원 과정의 석사,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융합대학원 과정에 개설된 교과 목 최소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. 다만, "참여대학원생"중 2006년 9월1일 기준으

로 석사 4학기, 박사 6학기 학생은 6학점을 취득 하는 것으로 한다.

- 제9조 (자격시험) ① 융합대학원과정의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자격시험은 대학원 학칙 및 각 학과 내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운영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자격시험을 조정할 수 있다.
 - ② 종합시험의 시험위원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로 따른다.
- 제10조 (운영위원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) ① 융합대학원과정의 학사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외에 8인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맡고 위원은 사업단 참여교수 중에서 8명을 위촉한다.
 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,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제11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대학원의 학칙에 따라 융합대학원 과정의 학사운영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- 1. 입학과 과정의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
 - 2. 학과·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
 - 3. 교과과정에 운영에 관한 사항
 - 4. 출강 및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
 - 5. 학위심사 및 수여에 관한 사항
 - 6. 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 . 폐에 관한 사항
 - 7. 기타 이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12조 (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(이하 "회의"라 한다)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.
 - ② 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 - ③ 개최 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으로 하고,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.
- 제13조 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14조 (학위청구논문) ①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및 심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대학원의 학칙에 따른다.
 - ② 학위청구논문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3인, 박사과정은 5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이를 심사한다.
- 제15조 (연구장학금) 사업단의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대학원생에게는 소정의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16조 (준용) 이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원의 제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**제1조 (시행)** ①이 학칙은 사업 개시일(2006, 03, 01)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(폐지 및 제정) 이 운영 규정은 사업단의 사업이 종료 될 경우 폐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융합대학원 과정의 학칙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